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은림 의원 외 2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872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5. 30.

## 2. 제안사유

-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, 전년 대비 지하철(8.93%), 시내버스(4.68%) 등의 이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이 6.12% 늘었지만, 마을버스만 2.39% 줄어 든 81만 3천명 수준으로 후퇴함
- 이러한 승객 감소는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과 인력난으로 연결되면 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과 배차간격의 증가,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가져와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

-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함(안 제9조제1항제1호)
- 나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상담 및 조사 연구(안 제9조제1항제2호)
- 다.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안 제9조제1항제3호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)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4. 6. 4. ~ 2024. 6. 8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#### 라. 관계기관 의견<sup>1)</sup>

○ 제출의견 : 보류

- 인건비 명목인 제1호 처우개선비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중복되므로 신설 어려움
  - 재정지원기준액 산정시 운수종사자 인건비 반영
  - 재정지원금은 인건비 항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
- 이미 조례 제9조에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

---

1) 버스정책과-20936호('24.6.10.)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업계의 운수종사자 유출을 방지하고 운송사업자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 시장 및 사업자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'24년 3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는 140개 업체, 252개 노선, 1,564대 운행차량을 2,815명의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고 있으나, 정상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운수종사자가 차량 1대당 2.2명임을 고려할 때 약 626명이 부족한 실정이며,

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'21년부터 운수종사자 부족인원<sup>2)</sup>이 크게 증가하여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등 승객 감소<sup>3)</sup> 및 이용 불편에 영향을 줌

2)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실태

(서울시 내부자료, '24.3., 단위: 대, 명)

년도	운행대수	現 운수종사자수(A)	적정 운수종사자수(B)	부족인원(B-A)
2020	1,590	3,289	3,498	209
2021	1,590	2,981	3,498	517
2022	1,599	2,776	3,518	742
2023	1,599	2,797	3,518	721
2024	1,564	2,815	3,441	626

○ 마을버스의 정상적인 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마을버스 업계가 시내버스 업계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, 운수종사자의 급여<sup>4)</sup>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, 택배·배달 활성화 등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채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

○ 또한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연령<sup>5)</sup>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약 42.9%로 서울시 전체 버스업계 운수회사 종사자

3)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(서울시 내부자료, 단위:천명/일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전년대비
대중교통	10,445	7,767	7,776	8,563	11,656	+36.12%
지하철	5,222	3,791	3,842	4,288	7,229	+68.59%
시내버스	4,053	3,125	3,121	3,439	3,610	+4.97%
마을버스	<b>1,170</b>	<b>851</b>	<b>813</b>	<b>836</b>	<b>817</b>	△2.27%

4) 시내·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월급여 비교 ('23년 기준 서울시 내부자료, 2년차, 단위:원)

구분	시내버스(①)	마을버스(②)	차액 (①-②)	비고
기본시급	11,828	9,620	2,208	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약 81% 수준
월기본급	2,081,728	1,693,120	388,608	8시간×22일 (176시간)
주휴수당	378,492	307,840	70,652	8시간 × 4일
연장근로수당 (일단위)	390,324	317,460	72,864	1시간×1.5시간×22일
연장근로수당 (주단위)	177,420	567,580	△390,160	○ 시내: 월2회 5시간 근무(단축) ○ 마을: 월4회 9시간 근무(정상)
야간수당	325,270	139,100	186,170	○ 시내: 오전2, 오후3시간 적용 ○ 마을: 오전1, 오후2시간 적용
무사고포상금	210,000	-	210,000	마을버스는 없음
상여금	1,040,864	177,470	863,394	○ 시내: 기본급의 600%(연간) ○ 마을: 기본급의 200%(연간)
합계	4,604,098	3,202,570	<b>1,401,528</b>	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약 70% 수준

5) 서울시 연령대별 버스회사 운수종사자 현황

연령대	서울시 전체 버스회사		서울시 마을버스	
	종사자수(명)	비율(%)	종사자수(명)	비율(%)
30세미만	232	1.0	97	3.4
30대	1,084	4.5	196	6.8
40대	3,956	16.3	267	9.3
50대	10,636	43.9	517	17.9
65세미만	4,877	20.1	570	19.8
65세이상	3,450	14.2	<b>1,235</b>	<b>42.9</b>
소계	24,235	100.0	2,882	100.0

※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(한국교통안전공단) '24.5월 기준

연령분포에 비해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볼 때 마을버스 운수업계 처우개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2항6)에서 시·도는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·개선,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·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
현행 조례 제9조7)에서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, 상담 및 조사 연구사업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현재 마을버스 업계 상황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등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
---

6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(재정 지원)

②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~6. <생략>

7.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개선하는 경우

8.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)

①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다만, 서울시는 현행 조례<sup>8)</sup>에 따라 운송수익금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, 지원금에 운수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기존 지원금 이외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

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지 여부, 운수회사를 통해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경우 누수 방지 대책 등 실행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

---

8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(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

④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(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)을 매년 초에 정하고,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